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3
----------	-----

2025. 1. 2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8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1월 22일
 -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)에 따라 지원·육성되는 새마을운동조직인 충청북도새마을회의 관련단체로 설립된 “충북청년새마을연합회” 사업의 지원 및 포상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.
- “충북청년새마을연합회”는,
 -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,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과 지구촌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,
 - 충청북도새마을회에 위치하고 있고,
 - ▲새마을운동 관련 사회공헌 사업, ▲회원들의 특기와 재능을 활용한 국내외 봉사활동, ▲청년문화를 선도하는 사업, ▲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체운동 및 시민의식 개선 운동, ▲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,
 - 새시봉청년새마을연대 등 12개 청년새마을 연대, 190명의 회원이 활동 중임.

【참고】 충북 청년새마을연대 현황

연번	시군	청년연대명	회원수	연번	시군	청년연대명	회원수
1	청주시	청주 새시봉청년새마을연대	18	7	영동군	레인보우영동 청년새마을연대	12
2	청주시	새미모새마을연대	10	8	증평군	증평청년새마을연대	11
3	충주시	충주의 빛과소금 청년새마을연대	10	9	진천군	생거진천청년새마을연 대	17
4	제천시	푸른봄 청년새마을연대	39	10	괴산군	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 대	15
5	보은군	보은군청년새마을연대	18	11	음성군	음성군청년새마을연대	10
6	옥천군	옥천군청년새마을연대	20	12	단양군	단양수호 청년새마을연대	10

- 한편 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제4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양여, 사용, 수익을 허용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“충북청년새마을연합회”의 설립 목적과 사업,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문별 검토

- ‘안 제1조’는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,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함.
- ‘안 제2조’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청년새마을연합회”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- ‘안 제3조’는 ▲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, ▲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, ▲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.
- ‘안 제4조’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‘안 제5조’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에 따라 지원받고 육성되는 새마을운동조직인 충청북도새마을회가 기존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 세대 참여 기반을 마

련하고,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한 “충북 청년새마을연합회”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동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,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사업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실제 지원 과정에서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 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, 향후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지원 신청 절차, 정산, 중복지원 금지 등의 규정을 조례에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새마을연합회”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충청북도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
2.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
3.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)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